총여학생회로 신고하실 수 있어요!

신고메일 ysfem@yonsei.ac.kr
전화 2123-3645 (구내 3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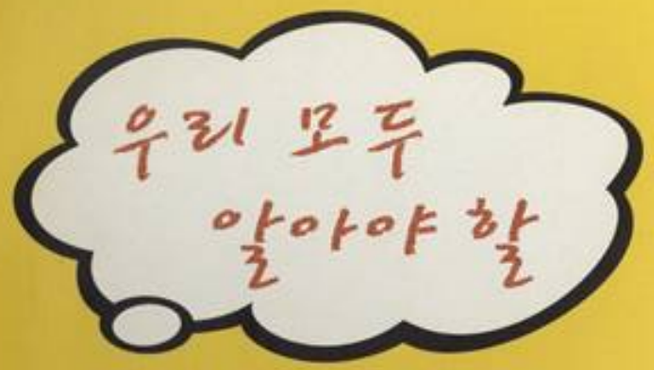

反성폭력 이야기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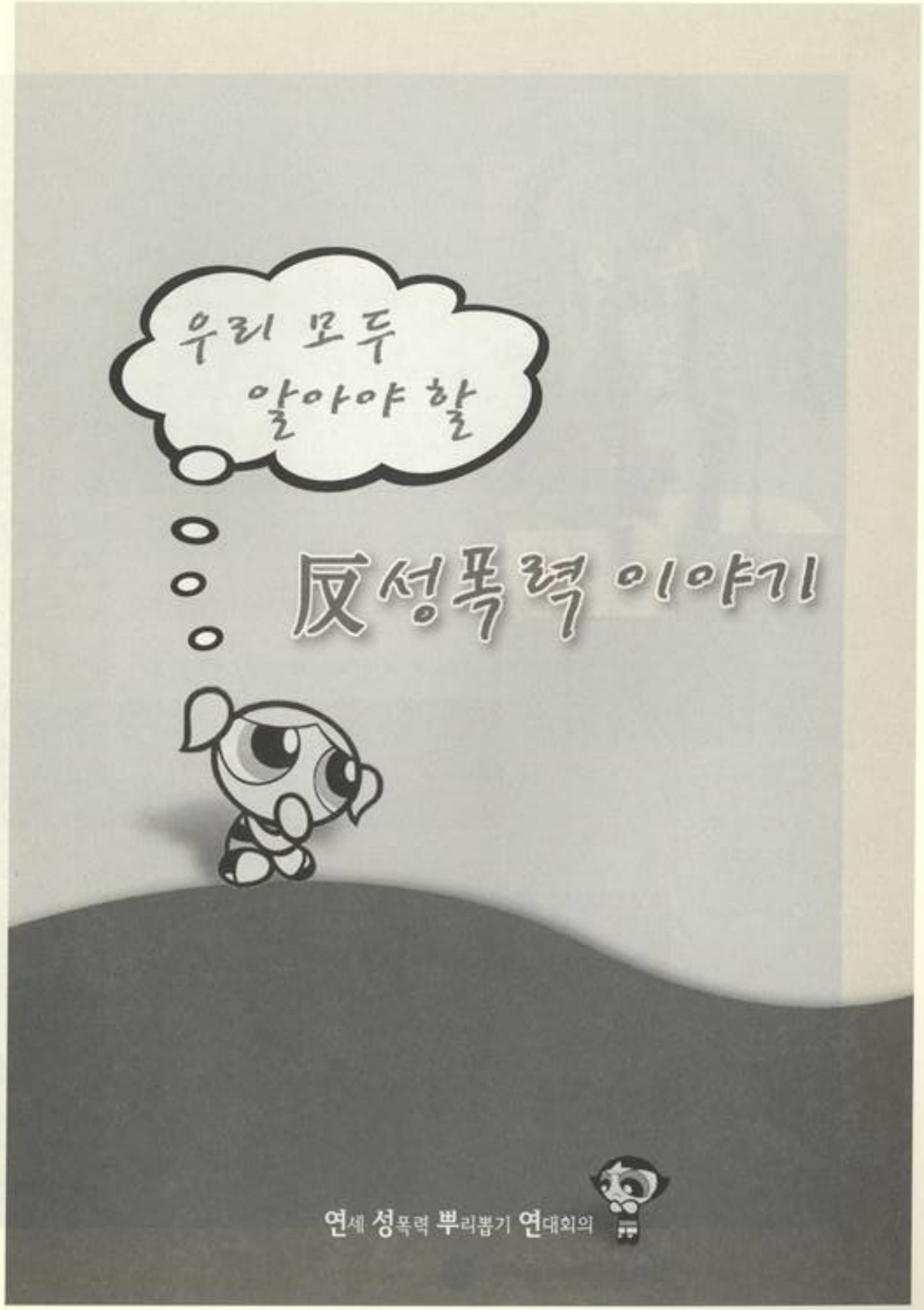
우리 모두
알아야 할
反성폭력 이야기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글 실린 순서

1. 여는 글 4

2. 성에 관한 솔직한 말말말!-성(性) 얼마나 알고 있니? 6

3. 성폭력, 나와는 먼 이야기?-헉! 딱 걸리는 내 이야기잖아. 8

4. 성폭력 이렇게 생각해보자 10
-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스미스씨 이야기 11
- 일상적인? 너무나 '성폭력'적인! 13

5. 反성폭력 학칙! !! 그게 머야?? 14

6. 모르면 왕따된다 反성폭력 O X퀴즈!! - 누구나 알 수 있는 반성폭력 상식 21
정답자에게는 푸짐한(!!) 상품도 있다고 하네요.
퀴즈도 맞추고 상식도 늘리고 멋진 상품도 받아요~~

7. 反성폭력 공부하고 싶어요~~ - 反성폭력 세미나 이걸로 합시다! 22
- 연세대는 성폭력 안전지대인가(강김정임 인문학부 97, 2001년 졸업) 23
- 성폭력 Stop!!! 생각을 바꿔라 38
- 성폭력에 관한 몇가지 오해 44

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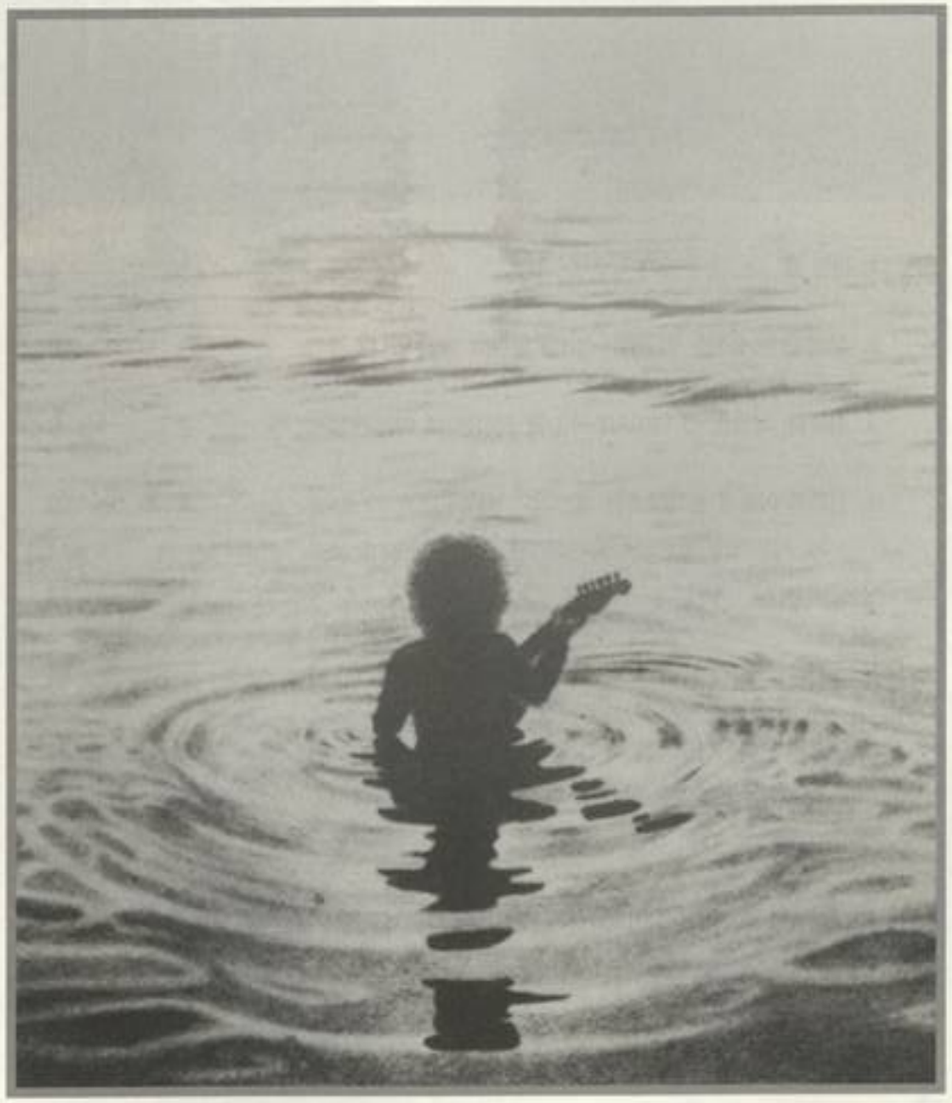

대학은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아는 것이며,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다. 어쩌면 이제는 '성폭력' 이라는 단어는 지겹다 싶을 정도로 대학 내에 성폭력 문제는 만연해 있고, 그만큼 反성폭력 운동 역시나 힘겹게 이루어져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왜 그 지겨운 '성폭력' 이야기를 또 꺼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진다. 책의 제목처럼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기본적인 反성폭력 지식들이나 정보에 대해 우리는 몇 점이나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올해만해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엄청난 수의 성폭력 사건이 단대 학생회나 총여학생회로 신고되거나 제보되었다. 연세대라는 공간 내에서, 우리 과 우리 동아리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결코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특정 단체에 국한된 일이 아닌 것이다.

학칙이 제정되었고 새터 내규가 만들어져서 시행 3년차를 맞고 있다. 학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와 담론을 만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째, 결과는 성폭력 사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 썩어가던 물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정도의 역할로 드러났다.

학칙 제정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삶의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면적으로 바꾸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학내에서 이 작업이 얼마나 충실히 이루어져 왔는가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점들이 분명히 있다. 학칙제정을 요구했던 문제의식을 단지 학칙에 제한하지 않고 바로 내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의 문제로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화하고 강제적인 규제 수단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방식의 반성폭력 운동들과 자신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직접 행동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들을 동시에 해 나가야만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성/성폭력에 대해 알기 주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료집을 기획하게된 것이다. 학칙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일상을 점검할 수 있는 反성폭력이야기까지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자 하였다. 나와 나의 주변을 돌아보고 각 단위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활발하게 풀어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 얼마나 알고 있니?

성..

연애, 남자, 여자,

남녀

여성성/남성성은 타고나는가, 학습되는가.
나는 아직 그것이 궁금하다.

페미니즘

솔직함

그리고 성은 聖스러운 것이 아니라 性스러운 것이다.

"부끄러워"
"어우~ 야해"

욕망

내숭

성교육

새터 때 민망하던 성교육 비디오

성폭력

남여모두
한번씩 더 생각해 볼 문제.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해요.

음흉한 눈빛

지하철 (오늘 아침 등교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치한을 만났다고 뭇불임)

그냥 화가 난다.

"변태, 찐따"

가로등 많이 달아요!

강간, 개이~쉐끼(그냥 개새끼가 아니구...),
나쁜남자,....

"아, 이 개새끼들"

예방보다는
인식이 중요해요.

성문제는 상품으로 조장되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예요.

공론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쿨럭.

성폭력, 나와는 먼 이야기???

헉! 딱 걸리는 내 이야기야!!!

#1

남자1: 너 요즘 만나는 여자 없냐?

남자2: 요즘은 **외국 여자가 좋아서** 영어를 배워야 할 것 같아

남자1: (피식 웃으면서) 영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를 배워야지...**

#2

선배: 오늘 벤치에 앉아 있는 후배 하나를 만났다.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왠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걸었다. 이것저것 걱정이 많은 듯 해서 위로를 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왔다**. 난 역시 **좋은 선배이다**^^

후배: 오늘 벤치에 앉아서 이런 저런 잡생각에 빠져있었다. 밀린 숙제와 과외... 엄마랑은 오늘 또 왜 싸우고 나왔는지... 앗 아는 선배가 옆에 앉았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어깨에 왜 손은 올리는 건지... 어색하기만 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다. 괜히 내가 오버하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그냥 피해야지**

#3

모임이 끝나고 뒷풀이에 갔다. 술이 오가고 적당히 분위기가 업 되어서 즐겁게 노닥거렸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애 하나가 사실은 자기가 xx를 좋아한다고 말하였다. xx는 무척 당황스러운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는 박수를 치면서 **커플탄생!**을 외쳤다. 그리고는 **러브샷!**을 외치기 시작했다. 이것이 대학의 자유로운 분위기인지... 혼란스러웠다.

#4

어떤 남자 선배 하나가 다른 남자 후배한테 장난치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 남자들의 대화는 왜 그렇게 욕이 많은지... 한 어절 끝나고 욕이다. 머... 친근함의 표시라는 데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애한테 '씨발년'이라고 욕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분이 나빠졌다. 역시 더 심한 욕은 년이군...

#5

봄이라 그런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소풍을 많이 온다. 여고생들이 우르르 본관 앞에서 놀고 있는데 백양로를 같이 걷던 남자애가 '와! 영계다'라고 소리지른다. 얘 변태 아냐... 속으로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앞에 있던 남자애들이 여고생들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야! 놀다가! 오빠가 잘해줄게~ 오빠가 카드도 있거든!'**

#6

서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 천을 박으러 갔다.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을 줄 알았다. 근데 웬걸... 다른 곳보다 5천원은 더 비싼 것이었다. 그래서 깎아 달라고 하니까 아저씨께서 하는 말이라니... **'예쁜 여학생이 와서 싸게 해 준거야!** 남학생들이 오면 더 비싸게 받아!'

#7

오랜만에 만난 여자 친구와 오붓하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한참 재밌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남자 둘이서 오더니 합석-.-;; 하잖다**. 괜찮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였는데도 안가고 계속 '우리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면서 자리를 비키지 않는 것이다. 결국 내 친구가 화를 냈더니 오히려 욕을 하기 시작했다. 엄청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술집 주인서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아무도 우리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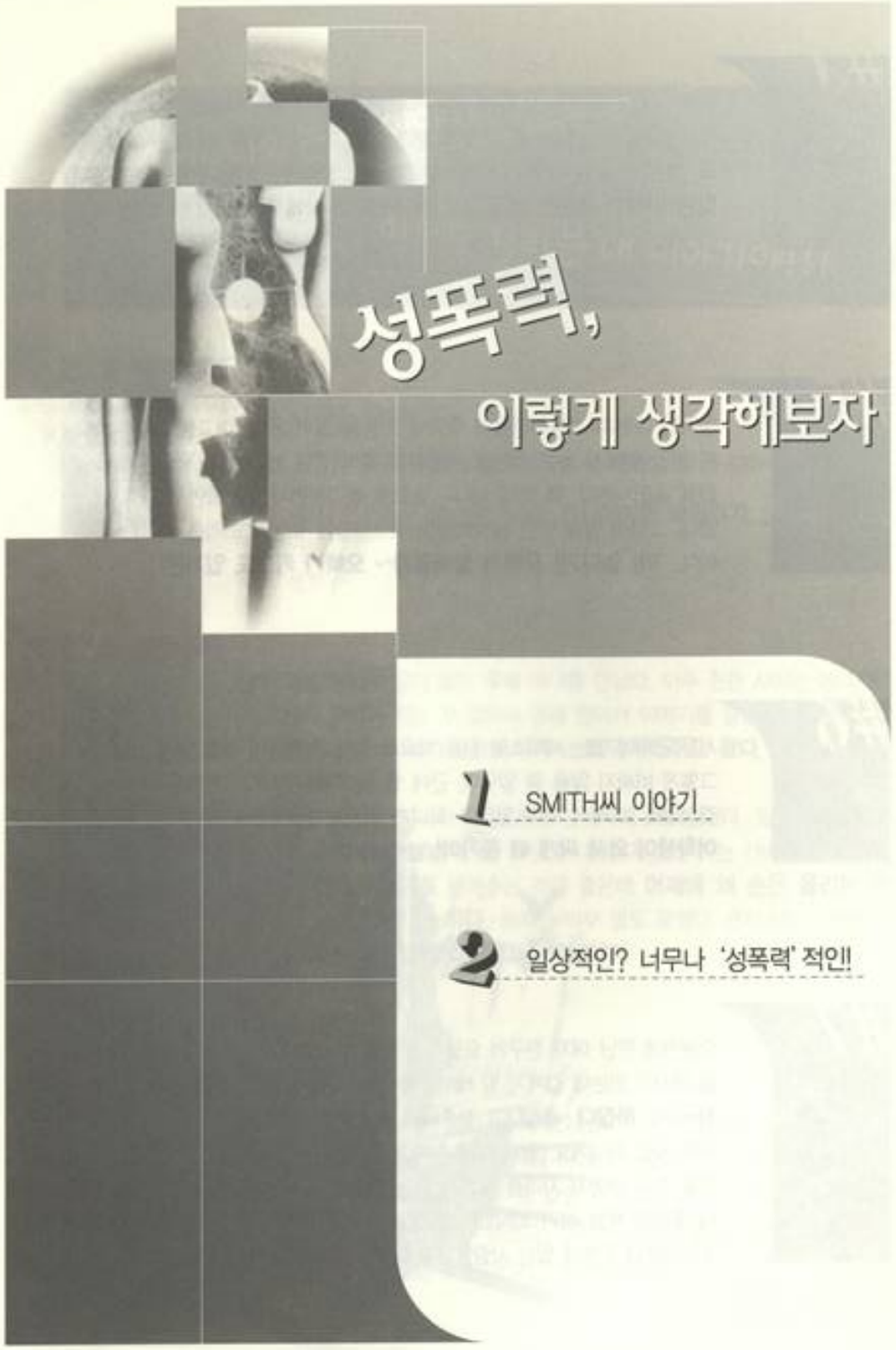

성폭력, 이렇게 생각해보자

1 SMITH씨 이야기

2 일상적인? 너무나 '성폭력' 적인!

SMITH씨 이야기

형 사 스미스씨, 길을 가는데 강도가 칼을 들이대며 위협했다고 주장하셨죠?

스미스 네

형 사 칼을 직접 보았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형 사 강도와 싸우고 저항하셨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형 사 왜 안했죠?

스미스 그 사람은 칼을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형 사 그래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요구대로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군요.

스미스 네.

형 사 소리를 질렀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형 사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도움을 얻기 위해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스미스 저는 두려웠습니다.

형 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아니오.

형 사 이전에 그냥 돈을 준 적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네, 물론이요.

형 사 음... 그건 당신이 기꺼이 준건가요? 그건 그렇고 강도를 만나기 전 그날 당신은 어디서 저녁을 보냈죠?

스미스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습니다.

형 사 술을 마신 상태라구요? 그래 술값을 어떻게 지불했죠?

스미스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형 사 지갑 안에 돈이 얼마나 있었죠?

스미스 50만원 정도

형 사 꽤 많은 돈이군요. 술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지갑에 있던 그 돈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까?

스미스 글쎄요. 아마 한 두 시간 동안 지갑을 밖에 내놓고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 질문을 하는 거죠?

형 사 당신은 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그냥 준 적이 있었죠. 사실 그 자선 행위로 인해 당신은 명망을 얻었겠죠. 당신은 당신이 술값을 지불했다고 했죠. 당신이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짜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스미스 들어보세요. 내가 원했다면...

형 사 그건 그렇고 노상 강도에게 잡혀있던 게 몇 시죠?

스미스 밤 11시쯤이요.

형 사 밤 11시에 길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스미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형 사 그냥 걷고 있었다구요? 너무 취해서 운전할 수 없었군요. 밤늦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을 테지요.
당신은 노상 강도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스미스 노상강도를 당한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형 사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스미스 음...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형 사 값비싼 옷 말이죠?

스미스 그래요.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난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형 사 다른 말로 하자면 당신은 밤늦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중이었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죠. 게다가 나는 돈이 많으니 내 돈을 빼앗아가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도록 비싼 옷을 입었구요. 그렇지 않나요?

형 사 우리가 다른 사항들에 대해 더 잘 알지 못한다면 당신이 노상강도 당한 이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 유발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스미스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밤길에 강도 털린 사람에게 이렇게 황당한 질문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과는 아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너무나 '성폭력'적인!

"그거, 아주 특이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잖아. 나랑은 상관없어.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좀 더 조심하지 않은 것은 네 잘못이야."

이 말들의 공통점은? 답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이 글을 읽지 않아도 좋다. 만약 모른다면, 이 글을 숙독하라. 이 글은 당신을 위해 쓰여진 글이다.

그거, 아주 특이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잖아. 나랑은 상관없어.

성폭력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성폭력은 너무도 무시무시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무척이나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스로가 가해자가 될 확률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보아버렸다. "여자애가 밥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는 성차별적 발언을 하던 그 선배의 머리에는 뿔 같은 것이 나 있지 않았다. 꼬리가 달린 것도, 눈이 세 개인 것도 아니다. 그저 평범할 뿐인 그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다.

폭력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 선생들도 폭력을 사용했다. 그렇게 일탈적인 행위를 하던 학교 선생들은 뭐가 그렇게 특이하던가. 평범하기 짝이 없는 그들도 가해자가 된다. 당연하다. 학교 안의 권력관계가 있는 한은 그들은 항상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아주 치열한 자기 반성과 고민이 있지 않은 한. '성폭력'의 경우 일상적으로 몸에 밴 성별에 대한 인식을 버리기 힘들기에 더더욱 평범한 당신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문제제기를 하면 자꾸만 날더러 예민하단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무엇보다도 같이 좋게 지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날카롭게 문제제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난 예민한 것이 아니다. 단지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고, 싫은 것을 싫다고 말할 뿐이다. 그런데 왜 나를 이

상한 사람으로 모느냐 말이다.

그럼 나 역시 똑같이 대답해주어야 할까? 어, 나는 단지 불편하다고 말했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리시는 거죠? 불편하게 할 의도는 없었어요.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

백 번을 양보해 문제를 제기한 피해자가 예민하다고 치자. 예민한 사람의 감정은 무시당해도 되는가.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것이 올바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너무도 뻔뻔하다. 흔히 '예민하다'고 말해지는 피해자는 그럴 만한 경험들이 있기에 예민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일거수일투족에 쉽게 흥분하는 것은 한국인 모두가 예민해서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일본과 가졌던 관계 때문인가. 밤길에 따라오는 그림자에 질겁을 해 잰걸음으로 걸어가는 여성의 '예민함'에 당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는가.

좀 더 조심하지 않은 것은 네 잘못이야.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자책과 주위의 질책이다. 흔히 여성들이 가기에 '부적절한' 공간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왜 남자들이나 가는 곳에 따라간 거지?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지? 그렇기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책임이 얼마간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을 언어화하고 알리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 피해자 스스로도,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도 수없이 되물어지는 질문들. 자책, 괴로움.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경우 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 그들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한밤중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왜 하필 그 시간에 어두운 곳을 지나갔냐고 묻지도 않고, 강도를 만났던 사람에게 왜 돈을 가지고 있었냐고 묻지도 않는다. 물론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나의 실수가 얼마만큼 개입된 일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자책하지도 않을뿐더러 그 경험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데도 수치심 따위는 느끼지 않는다. 지갑을 도둑맞았거나 넘어졌거나 했을 때에는 내 잘못이라고 괴로워하기보다는 에이, 재수 없어, 하고 마는데 왜 성폭력 피해자는 그 경험을 그렇게 넘길 수 없는가. 왜 가해자를 탓하는 대신 자꾸만 스스로의 잘못에 괴로워해야 하는가.

좀더 조심하지 않은 잘못을 물을 때 당신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모든 불운과 불행을 당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지. 길을 걷다가 취객이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고 난 뒤, 내가 시비 당할 만한 짓을 했어, 내가 이렇게 생겨먹은 것이 잘못이야, 라고 말하고 마는지 말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있다. 당신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위의 세 마디와 비슷한 말을 하려 한다면, 난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사람도 아냐, 라고.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0

1. 제정 이유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를 규정화하고자 함.

2. 규정 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 · 성명 · 연령 · 직업 · 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 당 기 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 · 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 · 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 · 재학(휴직 · 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된다.

제3조 (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 (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5조 (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 · 연구와 필요시 이의 교내 · 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 (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 · 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 · 의결)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 · 의결한다.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 · 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 · 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1. 연세대학교의 반성폭력 학칙은 2000년부터 시행되었다. ·····( )
2.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많이 일어난다. ·····( )
3. 성폭력은 물리적인 강제가 꼭 있어야 성립된다. ·····( )
4. 성폭력은 자제 못한 남성의 성욕 때문이다. ·····( )
5. 연인 사이에선 성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 ·····( )
6. 여성의 no는 내숭이다. ·····( )
7. 성폭력 상담소는 여학생 처 안에 있다. ·····( )
8.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
9. 언어적 성폭력은 가벼운 잘못이다. ·····( )
10. 성폭력 가해자는 정신 이상자이다. ·····( )
11. 반성폭력 학칙은 남성을 잠정적 가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 )
12.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기준과 판단은 피해자에게 있다. ·····( )
13. 연세대학교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리 없다. ·····( )
14. 의도가 없었던 행동이라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 )
15. 공개 사과 대자보는 가해자를 매장 시키기 위함이다. ·····( )
16.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자는 집에 일찍 들어가야 한다. ·····( )
17. 성폭력이라고 문제제기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다. ·····( )
18. 불쾌한 음담패설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적 엄숙주의의 발로이다. ·····( )
19. 여성도 남성과 같은 성욕을 가진 성적 주체이다. ·····( )
20. 가해자를 동조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

소속과 이름을 써주세요	소속		이름		연락처	

문제가 어렵다구요? 자료집만 잘 살펴보면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밑줄 그어가며 맞춰보세요^^*
정답을 기재해서 소속 단대로 응모하시면 정답자들에게 정말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와우~~
정답자는 다음 주 반성폭력 주간 기획 자보에 공개하겠습니다. 반단위로, 개인 단위로, 동아리 단위로 많이많이 참여해서 다른 학우들에게 자랑하세요~~

(지르는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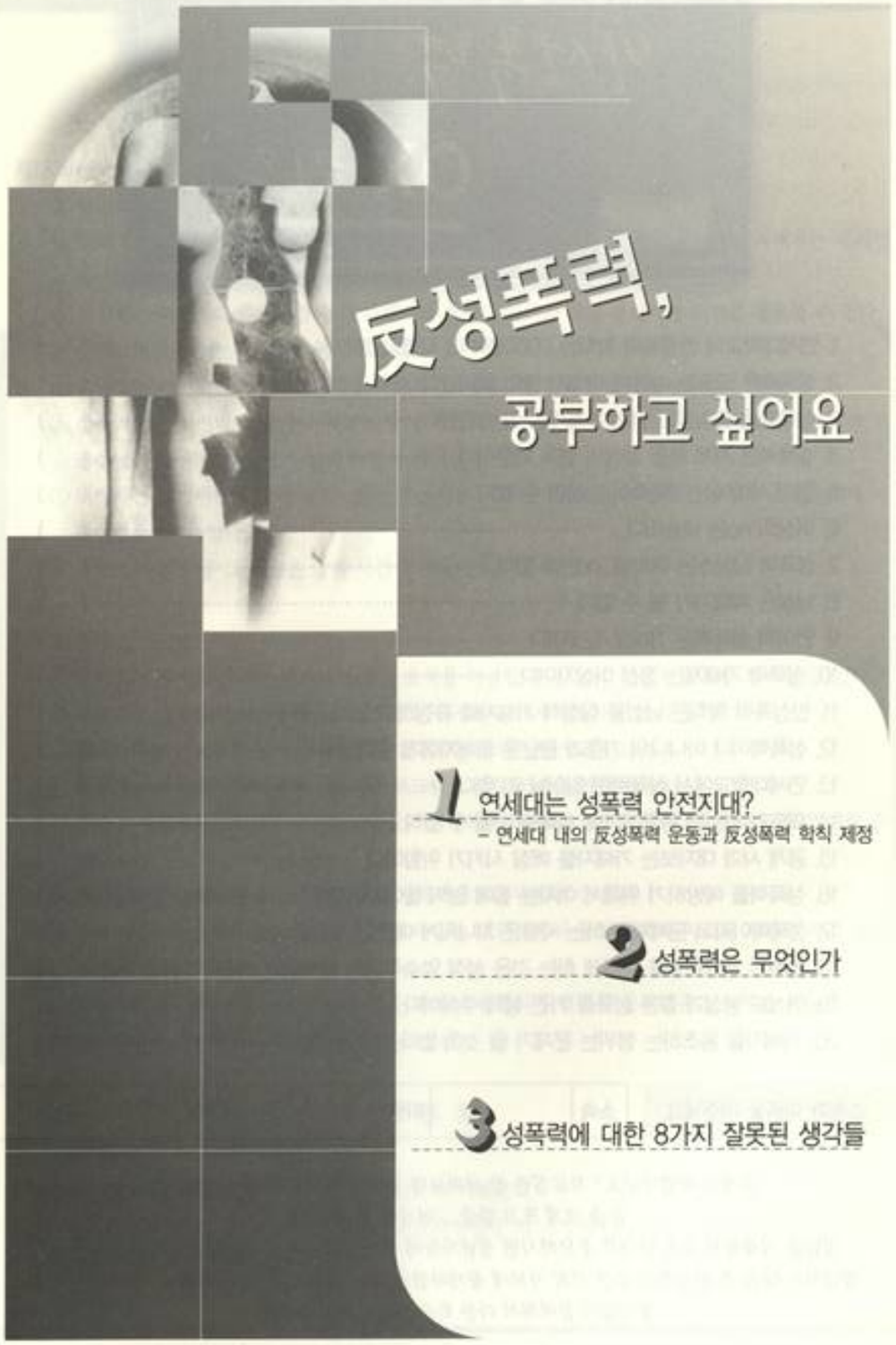

연세대는 성폭력 안전지대?

- 연세대 내의 反성폭력 운동과 反성폭력 학칙 제정

강 김 정 임 (인문학부 97, 2001년 졸업)

0. 들어가며

아마도 한국사회의 2000년, 21세기의 첫해를 설명하는 단어들 중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단어 중의 하나는 바로 '성폭력', 혹은 '성희롱'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총선시민연대의 대변인이자 진보적 사회운동가의 대명사로 자리매김될 뻔했던 장원씨의 성희롱 사건을 비롯해 개그맨 주병진씨, 육군의 장군, 대학 교수 등 유명인사 내지는 사회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들이 줄줄이 성폭력 사건의 도마 위에 올랐고, 롯데호텔 파업의 진압현장에서 여성노조원들에게 '막 말하고', 여성노조원들을 '막 만졌던' 공권력도 그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었다. 한편 각 대학에서는 잇따라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 제정되었고, 온라인 상에서 '운동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100인 위원회'가 공개한 노동운동, 학생운동 등 진보진영 내의 성폭력 가해자 명단으로부터 비롯된 성폭력에 대한 논쟁은 2001년이 된 현재까지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서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아직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판단은 유효할 것 같다. 장원씨 사건이나 주병진씨 사건에 대한 담론에서 보여지는 '꽃뱀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뉴스나 신문에서 보도된다는 것은 성폭력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성폭력 문제의 가시화는 선정적인 가십거리로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1999년 7월 1일

부터 시행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 · 시설 · 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 등 전 영역에 있어서 성희롱[1]을 금지하고 있고 이때의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 언어적 · 시각적 행위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간 '친밀감의 표시', 혹은 '자연스런 남성성의 표현' 정도로 여겨졌던 음담패설 등의 언어적 행위나 외설적인 사진, 편지 등을 보여주는 등의 시각적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포괄적인 성희롱 개념은 지속적인 한국사회 내 反성폭력 운동의 결과이며 여성과 남성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대학 내의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차별금지법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 속속들이 제정되고 있는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나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의 대학에서의 변화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이라는 조건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시행과 함께 각 대학에서 받아보게 된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충 · 상담창구 마련,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성희롱 유형, 수업상 적절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등 성희롱, 남녀차별 예방과 금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참조해야 할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침을 밝히고 있다. 2000년 연세대에서의 反성폭력 흐름, 특히 흔히 反성폭력 학칙으로 불리우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의 제정으로 실물화된 흐름 또한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0년 대학 내 성폭력에 관련한 연세대 내에서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학생 중심의 反성폭력 운동과 타 대학에서의 움직임 등의 여러 조건들을 동시에 살펴보는 것 또한 필요하다.

1. 연세대는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다?
– 反성폭력 학칙 제정 전까지의 反성폭력 운동

1996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계기로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됨

연세대 내에서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96년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

1) 이때의 성희롱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고 볼 수 있다. 이른바 '한총련 사태'가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96년 8월 말 '연행된 여학우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자세한 상황과 함께 컴퓨터 통신에 올라오면서 '한총련 사태'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전경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공개되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가시화되지 않았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내었고, 한편으로 이 사건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원들로부터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발언을 듣거나 온갖 욕설이 동반된 협박전화들을 받는 등의 해프닝을 낳기도 했다.[2] 연세대 내에서도 여성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자보 등을 통해 공론화했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소, 고발 내용의 기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다음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전경들의 발언과 성폭력을 당했던 여학생들의 증언 중의 일부이다.

588이나 가라. 이런 년들은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다 수출해 버려야 한다.
너희는 북한에 가서 김정일 기쁨조나 해라. 이 씨발년들아.
니네 사수대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밤에 뭐했냐. 사수대한테 니네 몸대주고 살았지?
고년들 털 참 많게 생겼다.
야, 이 씨발년들아. 니네 위안부 노릇하려고 왔냐.
돌 한번 던진 애들한테 한번씩 빨아줬냐.
내가 밥 사줄테니까 내 것도 빨아줄래?
이 씨발년아, 이 창녀만도 못한 년아, 넌 몇 놈하고 잤냐.
니네 우리 차에 타기만 해봐라. 다 강간해 버릴까다.
"지나가는 애들 순서대로 가슴을 덥썩 잡아가지고 뜯었어요. 엉덩이를 전문적으로 만지는 사람 따로 있었구요. 급하게 지나가니까 손을 탁 집어 넣었어요"
"전경들이 곤봉으로 배를 때리고 가슴을 쥐고 내려갈 때 뒤에서 손이 올라와서 음부쪽을 만졌고…"

–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자료집, 1997

이 사건에 대한 연세대 내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주사파론이나 학생의 자치권 탄압 등 '한총

2) 추미애 의원은 96년 10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총련 사태 진압과정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관련 경찰관들의 처벌을 요구하면서 성폭력을 당했던 여학생들의 증언을 그대로 보고했다. 그 과정에서 전경들이 여학생들에게 했던 언어적 성폭력이 추미애 의원의 입을 통해서 보고되었고, 이에 대해 그 자리에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추미애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그런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냐며 오히려 추미애 의원을 비난했다.

련 사태'에 얽혀있는 여타의 문제들에 묻혀 그리 크게 터져나오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사건으로 인해 촉발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이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이하 여성연대회의)가 구성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여성연대회의는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국민대 총여학생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울대 관악여성모임연대, 연세대 총여학생회, 영남대 총여학생회,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등 18개 대학의 총여학생회, 여성위원회 등 여성운동을 하는 학생 단체들이 학내 성폭력 근절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구성한 연대모임으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운동을 각 대학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사례, 反성폭력 운동에 관한 자료, 성폭력 사건 처리, 각 대학의 反성폭력 학칙제정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해 왔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현재까지 해 오고 있다.[3] 사실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는 여성연대회의를 빼놓고는 서술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연대회의는 각 대학에서 공론화되었던 개별적인 성폭력 사건부터 反성폭력 학칙제정의 상황 등을 공유·소통하며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反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주축이 되고 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my body is a battle ground!

97년에는 연세대 내에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에 의해서 성폭력 사례들이 수집되고 공개되면서 학생간에 일어나는 성폭력과 수업시간의 교수에 의한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사례 중 학생사이의 성폭력은 술자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음담패설이나 여성에게 술 따르라는 요구, 여성을 대상화하는 게임에서의 벌칙 등의 성폭력부터 신체적 성폭력까지 다양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남성중심성, 왜곡된 공동체 문화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성폭력에 대한 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성폭력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강간이나 물리적 성추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이라는 것,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의 문제나 개인의 도덕성의 부족으로 인해 빚어지

3)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1994년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일명 우조교 사건)을 올바로 처리하기 위해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우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의해서였다. 신교수 사건으로 인해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 특히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수성을 절감한 공대위는 교수·교직원·학생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해 성폭력 사건이 공식적으로 처벌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신교수 사건의 소송이 93년부터 시작되어 98년까지 6년이라는 긴 시간을 끌면서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은 소강기를 맞다가 각 대학에서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들이 공개되고 97년 2월에 국민대 공과대 교수에 의한 여학생 강간사건이 공론화되면서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필요성이 다시금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장임다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 당신도 발언해야 한다』, 〈문우〉36호, 2000)

는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 사회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학내에서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성폭력에 대한 개념부터 뒤흔드는 것이었다. 93년 서울대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4]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가볍다고 여겨지는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성희롱이 된다는 것이 이슈화되긴 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는 성희롱의 포괄적 개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교수와 학생, 혹은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등 권력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 즉 가해자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이라는 지점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97년에 연세대에서 여성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일상생활 속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육체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드러냄과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97년 말에는 신학과 김모 교수(? 김균진 교수)가 교양필수인 현대인과 기독교 수업시간에 행한 성폭력적 발언이 총여학생회에 의해 공론화되고 교수의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김모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한 학생에 의해 총여학생회 선거가 진행되는 중 총여학생회의 한 선거운동본부로 신고되었고, 신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가 총여학생회로 당선된 후 총여학생회에서 이 사건을 자보를 통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론화하고 당사자인 교수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음은 신고한 학생이 기록한 수업시간 중 교수 발언의 일부이다.

> 『하얀 기억 속의 너』라는 소설 얘기하면서, '그 소설에 보면 주인공 여자가 자기를 물심양면 도와준 한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다고 합니다. 날 가지고 싶으면 가져라...' 이 얘기를 하면서 교수는 낄낄대며, 그야말로 낄낄대며 '정말 그런 떡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상대 남학생들? 그야말로 눈 앞의 떡 아닙니까?... 근데 그 남자는 정말 대단하게도 진정으로 우러나지 않는 성관계는 거부를 했답니다.' 이에 대한 그 교수의 말, '예, 저는 이 남자를 보며 정말 예수님의 헌신이라고 느꼈습니다...'
>
> '여학생들 멋이나 내고 시집이나 잘 갈 궁리하지 마세요. 이대 학생들 보면 철학, 신학 박사가 다수인데 연대 여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다 빤질빤질하게 화장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남자나 꼬셔볼까 하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4) 주 3)에서 밝혔듯이 이는 '우조교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되었던 성희롱 사건을 의미하는데 '우조교 사건'이라는 명칭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행동이나 피해자의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왜곡된 성폭력에 대한 담론에 기반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그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딴 '신정휴 교수 성희롱 사건'이라고 칭한다.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 나이 들어서 기능은 있지만 힘이 없어지면, 집에 있는 여자들 맨날 생각하는게 뭐겠어요?(도중에 수업에 늦게 들어온 한 여학생에게 '시집갈때도 그렇게 늦을래?') 바람필 궁리나 하고... 여자 때리지 마세요. 어차피 남편이 약값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참, 여자한테 맞는 남자도 있지요. 얼마나 병신이면 맞고 삽니까? 안 그래요, 상대 남학생들?'

'정욕에 불타서 참을 수 없을 땐 한 몸처럼 되지... 안 그래요, 여기 남학생들? 무슨 말인지 다 알면서 그래요. 내가 야한 얘기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욕이 충족되고 나면 넌 남이라는 식으로 싹 돌아누워 잠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실 매일 먹는 반찬 지겹기도 하지 않겠어요?'

'남자들 출장가고 그러면 다들 딴짓하게 마련이지요. 사실 출장간다면 남자 동료들이 다들 좋겠다고 한마디씩 하고 그럽니다. 여기 여학생들, 남편이 출장간다면 괴로워해야 합니다... 제 친구놈이 하나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새로 고졸 여사원이 들어오면 꼭 따먹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자기는 나쁜 놈이라고 그러긴 합니다...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성을 아는 눈빛은 어둡고 음침합니다. 갓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군대 갔다온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사실 군대 갔다오면 다 사창가에 가보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들도 있기 하겠지만... 난 척 보면 성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2000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자료집』, 2000

이 사건은 연세대 내에서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이 교수의 실명과 함께 공개되고 공식적인 사과가 요구된 최초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된 최초의 성폭력 사건이었다. 당사자인 김모 교수는 결국 수업시간에만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고 한다.

97년 말에 선거를 통해 당선되어 98년 한해동안 활동을 했던 총여학생회는 선거 때 성폭력 학칙 제정과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라는 공약을 내놓았다.[5] 연세대 내에서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학칙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98년 총여학생회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연세대에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지는 못했지만 총여학생회에서 연세대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유형과 사례, 성의식, 성폭력 학칙제정에 대한 생각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연대회의에서 주최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 공청회에 참가하는 등 98년에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여성문제를 고민하는 사회대 공동체 'beyond'나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 등 학내에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은 反성폭력 학칙제정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反성폭력 운동을 펼쳐나갔다. 여성자치단체들은 단과대 안에서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공청회를 통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자치규약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 성폭력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화장실 게시판을 통해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수집된 사례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이러한 흐름은 99년까지 이어졌다. 당시 학생들에게 성폭력 사례를 수집하고 그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례 수집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대학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수집된 사례들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는 없었지만 진보적인 공간으로서의 대학, 혹은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대학이라는 허울 속에 은폐되어 왔던 대학 내 성폭력의 현실을 폭로하고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막연히 '불편함' 혹은 '불쾌함'으로 각인되어 있던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언어화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전히 '나는 성폭력이랑 상관없다'는 인식이 학내에 팽배하지만 총여학생회와 여성자치단체들의 활동으로 인해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연세대 내에서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되었고, 성폭력이 소수 강간범의 문제가 아닌 일상에 만연한 문제라는 생각이 서서히 학내에 확산되었던 것 같다.

2. 남녀차별금지법과 反성폭력 학칙

2000년에 연세대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운동의 결과이자 또 하나의 시작점인 규정이 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남녀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남녀차별금지법은 고용평등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뿐만 아니라 교육,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차별시정 대상기관을 민간기업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남녀차별금지법이 대학 내 反성폭력 운동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성폭력의 개념, 특히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광의의 성폭력 개념을 비

5)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①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현재의 형법상 규정은 가해자인 남성의 시점이 지배적입니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습니다.
② 성폭력 전담기구를 만들겠습니다.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정된 학칙을 운용하고 법 자문 및 변호사 선임, 피해자 치유 상담 프로그램,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등, 학내 성폭력 전반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제10대 총여학생회 김신현경 · 최천승민 선거운동본부, p. 16, 선거정책자료집, 1997)

교적 충실히 고려한 성폭력 개념이 법적으로 정리되어 명문화되었다는 점과 함께 교육기관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금지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남녀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1. 목적, 2. 정의, 3.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4. 학교(기관)장, 상급감독자, 직원의 책임,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첨부자료 1.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첨부자료 2.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관한 고충상담시 유의사항, 참고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은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절차,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 피해자의 자세 및 대처요령, 교육에서의 대표적인 성희롱 유형 등을 비교적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에서 신속하게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가. 고충상담자의 지정

1)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에 관한 고충신청 및 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함)이 "직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제기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 고충상담을 받는 직원 또는 고충상담에 응하는 상담원 등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2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되, 상담 시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성의 상담직원이 동석)

3)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서는 기관장이 정하는바에 의해 상담요원(상담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적절 활용 병행)등을 두고 상담을 받을 일시, 장소 및 절차를 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기회 확대 방안 강구

4) 상담요원에 대한 적절한 연수기회 부여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상담 전문성 제고 방안 강구(상담자 연수기관 : 별첨 참고자료 9. 단체명단 참조)

나. 고충상담자의 임무

1) 상담원 등은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문제의 사실관계 조사 및 당해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 등으로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 노력

2) 상담원 등은 위 고충상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역량 발휘

3) 상담원, 주변 관계자 등은 고충상담에 응함에 있어 관련자의 자존심이나 명예, 인권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비밀준수 의무 부과)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중 일부

다. 대학 등 각급학교(기관)의 역할

○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통보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하여 학교(기관)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현장에서 학생 상호간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 수업 시 지도하고, 학칙, 내부규정 등으로 문제해결 노력

위와 같은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은 연세대 내에서도 여학생처가 주축이 되어 1999년 말부터 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 학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反성폭력 학칙이 필요하다는 총여학생회나 여성자치단체 등 학생의 목소리는 98년부터 가시화되었으나 학교측에 의해 실질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의 필요성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학칙을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거의 2000년부터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3. 2000년,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다

2000년 연세대에서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反성폭력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 번째는 새터 反성폭력 내규제정운동이고 두 번째는 反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다.

성폭력적 문화에 대한 자치적 성찰 – 새터 反성폭력 내규 제정

새터 反성폭력 내규 제정 운동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의미하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 기간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 사건들을 처리할 수 있는 反성폭력 내규를 학생사회에서 자치적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주목한 이유는 그것의 특수성 때문이다. 연세대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일반적으로 학교측에서 준비한 행사와 응원전 등의 프로그램으로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3일 정도의 공식 오리엔테이션과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2박 3일 정도의 신입생 수련회로 이루어진다. 특히 신입생 수련회는 신입생 수련회에 참가한 신입생과 선배 모두가 2박 3일동안 같은 공간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성폭력이 발생한다.

98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서 게임의 벌칙으로 97학번 한 여학생이 다른 조에 가서 술을 얻어오게 되었다. 술을 얻으로 다른 방으로 들어가자 후배로 보이는 한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 '스트립쇼 해라, 그러면 술을 주겠다'고 이야기했다.

98년 신입생 수련회시 모 단대에서 신입생 남학생이 동기 여학생이 술에 취해 잘 때 옆에 누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입맞춤을 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그 일을 겪은 여학생은 자다가 깨서 굉장히 당황했으나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옆 방으로 옮겨서 잤다.

99년 모 단대 신입생 수련회에 중앙동아리 하나가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했다. 신입생 수련회 행사 중 이 동아리에 속해 있는 한 남학생이 수련회에 참석한 여학생들을 점수로 평가하고 평가글을 그 동아리의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올렸다. 이를 안 단대 학생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그 동아리에 속한 당사자 남학생이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관련된 글을 게시판에서 삭제하였다.

99년 모 단대의 조별 술자리에서 어떤 조 남학생 5명이 술을 얻으러 다른 조에 돌아다니면서 어린이 체조 노래를 개사하여 성기를 지칭하면서 노래를 불렀다. 그 자리에 있던 여학생이 불편을 제기했으나 '재미있지 않느냐' 라는 말로 무시되었다.

99년 새터에서 한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다. 이에 여학생이 응하고 술을 따르자 '잘 따르네, 술집에서 일했나보지?' 라고 말하였다.

96년 모 단대에서 D전자 광고를 패러디한 내용으로 남학생이 성기 모양으로 스크럼을 짜고 앞에 있는 남학생 한 명이 암바사를 들고 있었다. 연구원 복장을 한 여학생이 남학생이 들고 있던 암바사 병을 탁탁 치면서 멘트를 하자 남학생이 암바사를 뿌리며 사정하는 것을 흉내내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새터 反성폭력 내규 토론용 자료집」, 2000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개인 대 개인 뿐만 아니라 집단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의 형태가 상당수를 차지해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며,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장난삼아 한 말이나 행동' 이라는 말로 성폭력적 언행이 정당화되기 일쑤이다. 또한 신입생의 경우 선배들을 통해 접하게 되는 대학문화는 진보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해 자신이 느끼는 불쾌감들을 '대학문화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성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이 진보적인 것이구나' 등의 생각으로 무마하거나, 설사 그것을 폭력이라고 느낀다 해도 선후배간의 권력관계고 인해, 혹은 즐거운 분위기를 망칠까봐 문제제기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묻어두게 된다. 바로 이것들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새터 反성폭력 내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폭력의 유형을 명시하고 성폭력 사건의 발생 시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기구의 설치와 징계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성폭력적 문화를 성찰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집단적인 놀이문화

나 음주문화를 성찰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학생 스스로의 고해인 것이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두 번째 反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에 있어서는 남녀차별금지법의 양면적 효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남녀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분명 反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98년부터 꾸준히 反성폭력 학칙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학생의 입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총여학생회, 여성자치단체 등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여성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양날의 칼과도 같았다. 남녀차별금지법이 양날의 칼과도 같다는 것은 앞서 서술한대로 남녀차별금지법이, 특히 교육부의 업무처리요령안이 학교측에서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발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졸속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후자에 대한 우려는 근거없는 기우가 아니라 아주대의 실제 사례에서 근거한 이유있는 우려였다. 아주대에서는 1999년 3월에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학칙의 실상을 살펴보면,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이 따로 제정되었다기 보다는 기존 학칙의 상벌위원회 조항에 "강간–퇴학, 성폭력–무기정학, 성추행–유기정학"의 조항이 첨가된 것으로 기존 학칙의 일부가 개정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아주대에서 제정된 학칙은 총여학생회 및 다른 학생회 임원조차 뉴스 방송을 보고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학생들과의 논의과정이 전혀 없었고 일체의 여론수렴 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성폭력, 성추행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 또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피해자 보호조항이 빠져 있고, 교수 및 교직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채 학생만을 징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대의 反성폭력 학칙은 잘못 만들어진 反성폭력 학칙의 대명사가 되었다. 비록 아주대의 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학칙이나 내부규정 등의 자체 내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라는 교육부의 권고와 남녀차별금지법 이후 '갑자기' 드러나기 시작한 학교측의 학칙 제정 움직임은 연세대에서도 학교측에 의해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反성폭력 학칙이 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연세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연세대의 규정은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여학생회, 총학생회, 원주 총학생회, 대학원 총학생회 각 1인으로 구성된 학생대표와 여학생처장 외 4명의 교수로 이루어진 성폭력 대책위원회에서 6월 첫 회의를 가지고 학칙의 가안을 검토 ·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10월에 제정되었다.[6] 反성폭력 학칙 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총여학생회와 여성자치단체들은

연세대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청회를 통해 학교측이 제시한 反성폭력 학칙 가안에 대한 학생측의 수정안을 만드는 한편 교수와 학생간의 성폭력부터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학생과 학생간의 성폭력 사례들을 공개했다. 아래는 당시에 공개된 사례 중 교수와 교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례의 일부이다.

'여성은 남성과는 달리 성생리적으로 멀티 오르가즘이 가능하며 휴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우거나 매매춘에 종사하는 그런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되는 거지요'(의대 전공 수업, 행동과학-인간의 성행동)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화가 나서 어디 말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총여학생회로 메일을 보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수업시간에 앞에 앉은 어떤 여학생이 졸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교수님은 '자네 밤업소 나가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심리학적인 용어를 설명하시면서 그 예를 들었는데 그 예라는 것이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두고 선택을 할 때 약혼만 했을 때는 다른 남자가 맘에 들면 파혼을 하면 되지만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와서는 다른 남자가 더 맘에 든다고 해도 이미 첫날밤을 치른 버린 몸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을 번복하지 못하고 자기가 택한 남자를 좋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수님은 종종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자주 하시는데 그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그 교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할 데가 없나 찾다가 그냥 총여학생회에 말하는 게 제일 날 듯 싶어 편지 드립니다.(문대 심리학 전공 수업을 듣는 한 여학생이 총여학생회로 보낸 e-mail의 내용)

모 교양수업의 강사가 독수리상 앞에 처녀가 지나가면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는 걸 보면 요즘 연세 여학생들의 성관념을 알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후에 그 강사는 웃으면서 수업을 듣는 남학생들 중에 총각 있으면 손을 들어보라고 했다. 남학생들을 킥

6)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 학생과 교수가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는 등록금 동결과 모집단위 광역화 전면 재논의 등의 요구안을 채택하였던 4월 17일의 학생총회에서 제출되었다. 이후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학교측에 성실히 답해줄 것을 요구하며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등의 학생들은 학교의 본관을 점거했고, 5월 12일 학생대표와 학교측은 학생측의 요구에 대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합의문에서 反성폭력 학칙 제정에 있어서 성폭력 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성폭력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6) 성폭력 학칙 제정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하여 교수, 직원, 학생이 참여하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설립하여 추진한다.

- 이 기구에서 합의된 사항에 따라 성폭력 학칙을 제공한다.
- 교수와 학생은 동수로 한다. (학생대표 :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원주총학생회, 대학원총학생회)
- 2000년 6월 초 첫회의를 실시한다.

킥대면서 소란스러운 분위기였고 몇몇 남학생들이 장난으로 손을 들기도 했다. 그러더니 그 강사가 다시 수업을 듣는 여학생 중에 처녀가 있으면 일어나보라는 발언을 했다.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작년 모 건물에 계시는 수위 아저씨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한다. 팔을 쓰다듬는다던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경우다.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의 다리를 쓰다듬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아저씨는 다른 곳을 가다가도 익숙한 여학생이 있으면 따라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여학생들이 그 아저씨가 자신한테만 이상한 줄 알아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저씨한테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단과대 학생회로 신고를 했다.

- 연세성폭력뿌리뽑기연대회의, 『2000 학생이 중심되는 反성폭력 학칙 제정을 위한 자료집』, 2000

하지만 초기에 학교측이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거나[7] 反성폭력 학칙에 있어서 성폭력의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각종 조치를 심의, 의결하는 기관인 대책위원회에 학생위원을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등[8] 학교측과 학생측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마찰이 있었다.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과정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고, 문제가 되었던 대책위원회에도 학생위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 것은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가 적용대상이 되는 학칙을 제정하는 과정에 학생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학생측의 요구가 학교측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것이며 몇 년에 걸쳐 지속되었던 총여학생회나 여성자치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9] 이에 덧붙여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과 학칙 제정 이후 학칙의 운영

7)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학교측은 反성폭력 학칙 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할 의사는 있음지언정 학생대표에게 의사결정권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8) 이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규정 가안 중 제2절 성폭력위원회(제정된 학칙에서는 성폭력 대책위원회로 명칭이 바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2절 성폭력위원회

제8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2. 각 위원은 본교 교수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9) 규정 중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이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학교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4. 反성폭력 학칙 제정=성폭력 근절? 이제부터 시작이다

연세대의 反성폭력 학칙 제정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규정의 시행세칙이 이 글을 쓰고 있는 2001년 1월 31일 현재까지 완성되지 않았을뿐더러 앞으로 제정된 학칙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학교측, 교수, 학생, 직원 모두의 적극적이고도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규정의 제정은 대학 내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노력과 활동의 성과임과 동시에 시작인 것이다.

대학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것이다. 아무리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만큼 성폭력의 재생산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없다. 이제까지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는 은폐되었고, 그 중 몇몇 사건에 대해서만 학교측, 혹은 학생측에서 자체적인 대책위원회 등이 꾸려져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나마 자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가해자가 적당한 처벌을 받았던 사건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학내에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자율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그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다. 학생간의 성폭력은 주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과, 같은 동아리에 속해있다거나 같은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기가 싫어서 수업을 듣는 것에도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동아리를 떠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교수와 학생사이의 성폭력일 경우 이는 더욱 심각하다. 실제로 교수에게 성폭력을 당한 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경우 피해자의 많은 수가 졸업을 할 때까지 혹은 논문을 쓸 때까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지속적으로 성폭력

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다.

反성폭력 학칙은 대학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교육에서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행하는 성폭력만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차별금지법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학생간의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폭력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反성폭력 학칙 제정이 가지는 커다란 의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이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한 타 학교에 비해 연세대의 진보성을 저절로 담보할 것이라거나 성폭력 안전지대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다. 규정의 제정 자체가 연세대에서 진행되었던 몇 년간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진 여성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던 것인 만큼,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리 일상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남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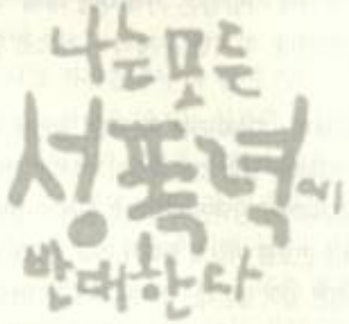

10) 남녀차별금지법의 제6장 성희롱 기준 중
제16조 성희롱의 금지영역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응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성폭력 Stop!!! 생각을 바꿔라

〈〈〈〈〈 2000년 「성폭력 학칙제정 자료집」 중

들어가며

'성폭력' 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강간' 이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은 가해자에 대해 '죽일 놈', '그런 놈들은 크게 혼내줘야 한다' 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 사건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 ○○양이 남긴 짤막한 유서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정이 베어있습니다. ○○양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자살하기 1시간 전인 새벽 1시반, 김해시 구산동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사 공모씨에게 장위면 부곡리로 끌려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공씨는 이양에게 다시 만나자면서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줬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 피의자 공모씨 :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아가씨가 드라이브하자 해 갔다.
>
> 최영태 기자 : 강간혐의로 긴급 체포된 공씨는 추행은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양을 부검해 정액과 DNA검사 등을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김해에서 MBC뉴스 최영태입니다.
>
> 1997.9.11 MBC 〈뉴스데스크〉

'수치스러운 삶 대신 죽음을 택한 이양의 선택은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요즘 세태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MBC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은 사회가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극명하게 나타난 사건이다. MBC에 따르면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폭력에 의해 자신의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가 아니라 순결 혹은 정조를 빼앗겨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의 육체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되찾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함으로써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세태에 경종을 울려주어야 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대학에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확장해보자.

흔히들 강간보다는 수위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의 예를 들어보자. 대학에서도 MT 장소나 하숙집 등지에서 강제추행이나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많이 공론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건이 공론화 되었을 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여자가 행동을 어떻게 했길래', 혹은 '남자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조금 과도하게 했나 보지' 등이다. 이처럼 사건이 공론화되고 해결되는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2중 · 3중의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몇 년 전 우리학교에서 술을 마시고 자취집에서 다 같이 자는 도중 신입생 남학우가 자고 있던 1년 선배 여학우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과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었고, 처음에는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대책위가 꾸려지고 사건이 공론화되다가 공청회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 신분을 밝히면서 사건을 처리해나갔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같은 학년의 남학우들은 '1학년 새내기 인생 망칠 일 있느냐', '대충 좋은 쪽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피해자와 비대위의 요구는 너무 심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한다. 자신에게 가해질 유형 · 무형의 비난과 수근거림,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다닐 '성폭력 당한 여자' 라는 꼬리표를 감수하고 성폭력의 경험을 자신의 신분과 함께 공론화한 결과는 바로 '남의 인생 망칠 일 있냐' 라는 동기들의 반응이었던 것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성폭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가? 흔히 너무나 당연히도 성폭력이라고 동의하는 강간의 경우에도 순결, 혹은 정조의 상실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피해자의 인권이야 어떻든 좋게좋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

문을 던지는 것으로부터 '성폭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성폭력인가?

성폭력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

최근 몇 년 간 여성운동 단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정립된 위와 같은 성폭력의 정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동의'와 '성적 자율권'이라는 말이다.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의 문제

성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법적 · 제도적 인식은 성폭력 여부의 판단 기준을 피해자의 저항여부로 보고 있다. 강간죄에 대한 판례에는 "강간죄를 구성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측 변호사는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한다. '한 손으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을 세차게 흔드는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볼펜을 그 구멍에 넣으려 해도 볼펜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구성되지 못한다는 증거로 이러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예를 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상황을 한 번 가정해보자.

요즘 왕따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의 한 반에도 역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있다. 그 반에서 힘도 세고 싸움도 잘 하는 몇몇은 지속적으로 왕따 학생을 불러다가 돈을 뜯어낸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마련해가지 못하면 그 왕따 학생은 맞는다. 하지만 그 학생은 돈을 뜯어내는 학생들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간다.

이 상황에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비록 왕따 학생이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성폭력의 문제가 이렇게 분명한 것

은 아니다. 하지만 성폭력의 여부를 저항의 유무로 판별하는 것은 위의 예를 통해 보았듯이 다양한 기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작동하는 권력을 깡그리 무시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 또한 '저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저항이어야 하는데 성폭력의 경우에 있어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확실한 저항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힘들다. 일반인이 확인 가능한 명백한 상처를 가해자의 몸에 입히지 않는 한 어떻게 저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피해자가 죽음의 위협조차 감수해야 하는 저항일 뿐이다.

다른 폭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특히 성폭력의 경우에 성폭력이냐 아니냐의 판단기준은 분명히 피해자의 동의 여부이다. 하지만 동의를 했다고 해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다시 앞의 가정으로 돌아가보자. 돈을 뜯어내는 학생들이 왕따 학생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협박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너 우리가 이러는데 불만있어? 있으면 말해봐." 하지만 왕따 학생은 불만을 말하지 못한다. 작은 소리로 "아니"라고 할 뿐이다. 외견상 왕따 학생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동의한다.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뿐만 아니라 선배와 후배, 교수와 학생, 혹은 상사와 부하직원 간의 권력 등 중층으로 얽힌 권력관계 사이의 암묵적 압력으로 인한 동의를 과연 '자발적 동의'로 볼 수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목도하는 현상이다. 예전에 문과대 여성모임 '모반'에서 화장실 백지자보에 자신이 당한 성폭력 사례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수집된 사례 중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다.

우연히 선배 오빠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선배 오빠가 계속 옆에 있는 내 몸을 만지고 내 얼굴을 만졌다. 그 당시에 나는 너무 기분이 나빴지만 쉽게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 상황에서 후배인 여학우가 보인 행동은 외견상 선배 오빠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싫으면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성폭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지만 그 여학우가 그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가해자가 선배라는 점,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또는 앞으로도 계속 마주칠 선배인데 싫다고 했다가 괜히 관계

가 서먹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굳이 여성의 no는 언제나 yes로 간주되며, 여성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지 않더라도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 '동의' 여부는 남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살아가는 조건, 또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권력관계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동의는 종속적 지위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 여부에 있어서 피해자 주관의 문제

성폭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말은 이제 학계에서, 여성운동 계에서 정설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대학 내에서도 서서히 공유되고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일차적 기준이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말은 동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은 피해자의 주관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외견상 '동의'라는 형태를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동의부터 암묵적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동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동의를 했더라도 그것이 어떤 성격의 동의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해 가장 흔히 제기되는 질문은 피해자의 주관이라는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객관'이 무엇이고 '주관'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자. '객관'의 대명사인 법률에서 강간과 강제추행을 구분 짓는 기준은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었는가의 여부이다. 그러나 얼핏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 기준에 의하면 여성의 질에 남성의 성기가 아닌 이물질이 삽입되었을 경우에는 강간보다 수위가 약한 강제추행으로 규정되며, 근래 신고가 늘고 있는 남성간의 성폭력은 어떤 형태의 성폭력이라 할지라도 결코 강간으로 규정되지 못한다.

성적 자율권의 침해

성적 자율권이라는 말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성적 자율권의 침해는 성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성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것은 강간과 같은 물리적 성폭력에서부터 불쾌한 성적 농담과 같은 언어적 유형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보통 성폭력의 심각도를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것부터 성

희롱과 같은 경미한 것까지 구분 짓는 경향이 있다. 물론 성폭력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과 언어적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경험 사이에는 당연히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성폭력의 심각도를 구분 짓는 것에 경계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접근이 가장 극단적인 성폭력에만 논의의 초점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강간에 초점이 맞춰진 성폭력 문제에의 접근은 강간이 아닌 다른 형태의 일상적인 성폭력들을 성폭력 담론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극단적인 형태가 아닌 나머지 형태의 성폭력에는 침묵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결국 성폭력을 단순히 비도덕적이고 문제 있는 몇몇 개인의 문제로만 환원시키게 된다. 그러나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일상적으로 당하는 성폭력, 수업시간 교수의 성폭력적 발언, 선배나 동기에 의한 성폭력적 발언 등 흔히 말하는 경미한 성폭력들은 강간과 같은 극단적인 성폭력과 전혀 다른 맥락 위에 서있는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전혀 경미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영향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나가며

성폭력에 대해서 사고할 때,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재수 없는 피해자와 정신나간 가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고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것인지, 그러한 성폭력 사건을 허용하도록 만드는 집단 자체의 문화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결마다 숨어있는 권력의 문제에 민감해지지 못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놓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과 위계로 인한 불평등한 권력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성폭력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잘못된 생각들을 마치 과학적 근거라도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념들의 위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고소는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폭력은 은폐되어 버리고 성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때문에 고통이나 후유증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잘못된생각 1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우리는 흔히 심한 성추행이나 강간만을 성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해서 상대방(여성)의 의사에 반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공포, 불안 등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 는 성폭력입니다. 이를테면 직장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짙은 농담,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의 추근거림, 성기노출, 음란전화, 음란통신,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요된 매춘,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등도 모두 성폭력입니다. 이렇게 보면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 문화의 한부분으로 스며들어 있고 모든 여성들은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크고 작은 성폭력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생각 2

강간은 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바로 이러한 통념 때문에 피해여성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폐시키며 깊은 자책감이나 수치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됩니다. 강간은 성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일 따름입니다. 물론 남성 성기의 삽입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만 그것

은 여성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 행위입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성은 순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성폭력을 강도에게 상해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피해여성의 심리적 극복은 훨씬 쉬워집니다.

잘못된생각 3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2%의 성폭력만 알려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은 특정 연령, 계층 혹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종교, 직업, 교육정도, 사회적 지위, 용모에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못된생각 4

남성의 참을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전제된 것입니다. 20세기 성과학자들에 의해 이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례에서도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의 표출일 때가 많고 때로는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은 억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여성의 성을 남성의 소유로 생각하는 남성중심적 성문화와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비하의식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생각 5

여성들의 심한 노출이 성폭력의 주범이다

여름철만 되면 각종 매스컴에서는 여성의 노출과 성폭력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된 생각이면서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그리고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언동에 성폭력 책임을 전가하거나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성을 한 인간으로

서가 아니라 남성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풍조가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비난의 화살을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리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잘못된생각 6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 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념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우발적 범죄로 보는 인식이 전제된 것입니다.

잘못된생각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저소득층의 성격 파탄자나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례를 통해 보아도 가해자가 정신이상자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직업이나 계층적 특수성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성실한 직업인으로 혹 은 착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무력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입니다.

잘못된생각 8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흔히 '흔들리는 바늘에 실을 꿸 수 있느냐?'며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간으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정조관념이 없는 여성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간범은 많은 경우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합니다. 따라서 피해상황은 흔들리는 바늘이 아닌 꽉 잡혀 있는 바늘과도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착하고 온순한 아내만들기 여성교육이 여성들에게 저항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게 만든 것도 큰 요인입니다.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反성폭력 학칙의 제정이 성폭력 문제에 관한 한 타 학교에 비해 연세대의 진보성을 저절로 담보할 것이라거나 성폭력 안전지대로서의 학교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믿음이다. 규정의 제정 자체가 연세대에서 진행되었던 몇 년간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남녀차별금지법으로 이어진 여성단체들의 反성폭력 운동의 역사 위에서 가능했던 것인 만큼, 우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우리 일상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이번에 제정된 규정에 대한 관심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실질적으로 성폭력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며 남성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연세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

를 소개합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라는 것에 대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요? 새터에 가신 분들이라면 방마다 붙어있던 포스터도 보고 파워퍼프 걸이 날아 다니는 자료집도 보셨겠네요. 어느 누구를 처벌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즐거운 새터 문화를 만들기 위한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단대, 총여학생회, 내규 기획단이 함께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성별의 구분과 그로 인해 드러나는 억압들로부터 자유로운 새터를 만들고자 모였던 2002 새터 반성폭력 내규 실무주체 연석회의가 해소되면서 '연세 성폭력 뿌리 뽑기 연대회의' 라는 이름으로 한해 동안 모임을 이어가기로 하였답니다. 줄여서 **연성뿌연**이라고 부르지요.^^

말 그대로 연대 내에서 성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이 모임은 지난 2000년에 있었던 연성뿌연이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새터 내규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2000년 연성뿌연의 활동을 이어받아, 앞으로 꾸준히 학내에서 반성폭력 운동을 벌여나가면서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단대와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모임이기에 각 단위에 맞게 반성폭력 운동의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함께 하지 못하는 단대들은 이번을 계기로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구요, 관심 있는 자치 단체나 개인도 언제나 환영한답니다. 보다 많은 단위들과 연성뿌연에서 만났으면 합니다. 각 단대나 총여학생회, 총학생회로 연락주세요. 우리 함께 연대에서 성폭력을 뿌리뽑아 봅시다!!!